

## 제10장 금융서비스

### 제10.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 나.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 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2.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는 그 장이나 양해, 또는 그 장의 조항들이나 그 양해의 항들이 이 장에 통합되는 한도에서만 제1항에 기술된 조치에 적용된다.
  - 가.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에 포함된 송금 및 혜택의 부인에 대한 항들 및 제8.11조(혜택의 부인)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나. 제8.10조(지불 및 송금)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10.5조에 따른 의무의 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 나.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다만,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모든 활동 또는 모든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이 장이 적용된다.

4. 이 장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10.2조

####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sup>1</sup>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10.5조제1항의 내국민 대우 의무의 목적상, 당사국은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 제10.3조

---

<sup>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2조 또는 제10.3조에 따라 “동종의 상황”에서 부여되는 대우인지 여부는 관련 대우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기초하여 투자자들, 투자들, 금융기관들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들 간을 구별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전체 상황에 달려있다.

##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 제10.4조

####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sup>2</sup>, 또는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금융기관이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

<sup>2</sup> 가호3목은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나.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 제10.5조

#### 국경 간 무역

1. 각 당사국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10-가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의무는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영업 또는 구매권유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당사국에 요구하지 않는다. 각 당사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 를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의는 제1항과 불합치하지 않아야 한다.
3. 당사국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 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6조

#### 신금융서비스<sup>3</sup>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10.4조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

<sup>3</sup> 제10.6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않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인가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법과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6조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기관에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 제10.7조 특정 정보의 취급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 나. 공개되면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 인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

### 제10.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특정 국적자를 고위 경영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이 자국의 국민, 자국 영역에 거주하는 인 또는 양자의 결합으로 구성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제10.9조 비합치 조치

1.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 그리고 제10.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그 당사국이 부속서 III에 규정된 자국의 유보목록 제1절에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또는 제10.8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sup>4</sup>

2.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 그리고 제10.8조는 당사국이 부속서 III에 규정된 자국의 유보목록 제2절에 기재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제8.2조(내국민 대우), 제8.3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8.4조(시장접근)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속서 I 또는 II에 규정된 당사국 유보목록의 유보항목에 규정된 비합치 조치는, 그 유보항목에 규정된 조치,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각 경우에 맞게, 제10.2조, 제10.3조 또는 제10.4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된다.

## 제10.10조

### 예외

---

<sup>4</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5조는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0.5조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는 한도에서만 그 개정에 적용된다.

1.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이 장의 다른 규정이나 제11장(통신) 또는 제12장(디지털 무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sup>5</sup>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 언급된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2. 이 장이나 제11장(통신) 또는 제12장(디지털 무역)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이 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은 제8.10조(지불 및 송금) 또는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에 포함된 항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장에 통합된 제8.10조(지불 및 송금) 및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에 포함된 송금에 대한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에 관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기관이나 공급자의 계열사 또는 그 기관이나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도 저해하지 않는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않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거나 금융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동종의 여건 하에 있는 국가 간에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

<sup>5</sup> “건전성 사유” 라는 용어는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 제10.11조

### 투명성 및 특정 조치의 운영

1. 양 당사국은 금융기관과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서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3. 제19.1조제2항을 대신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을 한다.

가.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 장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그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한다.

나. 그러한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자국이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그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접수한 실질적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sup>6,7</sup>

4.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한다.

5.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자율규제기구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가능하

---

<sup>6</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통합하여 최종 규정을 제시하는 문서와 별도의 문서로 그 답변을 공표할 수 있다.

<sup>7</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이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을 양해한다.

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치하거나 유지한다.

7.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한다.

8.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9.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20일 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 전에는 완료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120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10.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신청거부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 제10.12조

#### 자율규제기구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자율규제기구가 제10.2조 및 제10.3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10.13조**  
**지급 및 청산 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제10.14조**  
**인정**

1.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서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가.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또는

다.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는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간의 정보 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3. 당사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고 제2항에 기술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10.15조**

## 구체적 약속

부속서 10-나는 각 당사국에 의한 일정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 제10.16조

#### 금융서비스위원회

1. 제22.3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치된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부속서 10-다에 규정된 대로,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참여를 저해함이 없이,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 및 그 추가적인 구체화를 감독한다.

나. 양 당사국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위원회에 회부한 금융서비스 관련 문제를 검토한다.

다. 국가 감독 당국 간의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건전성 규제에 대한 자문 관련 사안에서 협력한다. 그리고

라. 이 협정상의 공동위원회가 결정하는, 이 장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3. 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 제10.17조

#### 협의

1.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을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위원회에 협의결과를 보고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에는 부속서 10-다에 명시된 당국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금융당국 간 정보 공유와 관련된 자국의 법 또는 양 당사국의 금융당국 간 협정 또는 약정의 요건으로부터 이탈하도록 당사국에 요구하거나, 특정 규제, 감독, 행정 또는 집행 사안에 방해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제당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제10.18조

### 분쟁해결

1. 제20장(분쟁해결)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이 조에 의하여 수정되어 적용된다.
2.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는 제20.7조(중재패널의 설치)가 적용된다.
  - 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전원 제3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 나. 그 밖의 경우,
    - 1) 각 당사국은 제3항 또는 제20.9조제5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 2) 피소 당사국이 제10.10조를 원용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의장은 제3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3.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이나 관행에 관한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가진다. 그리고

나. 제20.9조제5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4. 제20.14조(불합치의 경우 보상 및 혜택의 정지)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쟁 중인 그 조치가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만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나.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조치의 효과에 상당하는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또는

다.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서의 혜택을 중지할 수 없다.

### 제10.19조

####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이란

-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또는
- 다.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그러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의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란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란 지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배하는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란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 가. 직접보험(공동보험 포함)
  - 1) 생명보험
  - 2) 손해보험
-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라.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바.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사. 금융리스

아.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자. 보증 및 약정

차. 거래소 및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

1)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포함)

2) 외환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4)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양도성 증권, 그리고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 타. 자금중개업
-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 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 하.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 너.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투자란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에 정의된 “투자” 를 말한다. 다만, 그 항에 언급된 “대부” 및 “채무증서” 에 대하여는 다음을 말한다.

-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그 기관이 소재하는 영역의 당사국이 규제 자본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만 투자이다. 그리고
- 나. 가호에 언급된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외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투자가 아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외에,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대부 또는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그러한 대부 또는 채무증서가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에 규정된 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이다.

당사국의 투자자란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에 정의된 “당사국의 투자자” 를 말한다.

신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않으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는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 방법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포함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 기업의 지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국의 정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을 말하며, 상업적인 조건하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이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때의 민간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구란 유가증권 또는 금융과생상품 거래소나 그 시장, 청산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하여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비정부 기관을 말한다.

부속서 10-가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한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0.19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 포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 2)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상담<sup>8</sup>, 위험평가<sup>9</sup>, 계리,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제10.19조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인과 같이, 이 항의 가호 및 나호에 기재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

2. 제10.5조제1항은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제10.19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

<sup>8</sup> 상담이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제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sup>9</sup> 위험평가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례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3.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가. 금융 정보<sup>10</sup>의 제공 및 이전

나. 제10.19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sup>11</sup>, 그리고

다. 중개를 제외한, 제10.19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sup>12</sup>. 이 약속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펀드사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에 대하여는, 한국이 자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서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이 약속은 (1) 한국 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2) 한국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

<sup>10</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항가호에 언급된 "금융 정보"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간행물 안에 포함되거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금융 또는 사업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sup>11</sup> 한국의 약속은 소비자의 민감 정보 보호, 민감 정보의 권한 없는 재사용 금지, 그러한 정보의 처리에 관한 금융기관의 기록에 대한 금융규제당국의 접근 권한, 그리고 기술 시설의 위치 요건과 같은 특정한 고려사항에 대한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sup>12</sup> 자문서비스는 포트폴리오 운용자문을 포함하지만 포트폴리오 운용에 관한 그 밖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고, 부수서비스는 금융서비스의 정의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언급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 에콰도르

###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0.19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 1) 국제 해상 운송, 국제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 포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 2)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감독당국이 서비스에 자격을 부여하는 한, 가호에 기재된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 그리고

라. 가호 및 나호에 기재된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중개

###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2.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0.19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감독당국의 사전 인가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조건으로, 제10.19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나. 중개 및 신용조회와 분석을 제외한, 제10.19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 부속서 10-나 구체적 약속

### 제1절 감독 협력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 적발 및 고발하기 위한 권한 있는 당국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지원을 제공하는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금융당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금융당국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금융당국이 양해각서 또는 특별 약속과 같은 양자 간 협의 또는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자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제2절 정보의 이전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 가. 개인 정보와 개인 사생활, 그리고 개인의 기록 및 계정의 비밀성을 보호하는 조치, 또는
- 나. 건전성 고려에 근거하여, 특정 기업을 그러한 정보의 수신인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당국으로부터 사전 인가를 획득하도록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조치

다만, 이 권리는 이 절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제3절

#### 정부지원정책 이행기관

양 당사국은 정부지원정책 이행기관이 이 장의 목적상 금융서비스 공급자로 여겨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부속서 10-다  
금융서비스위원회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에콰도르의 경우, 금융정책규제위원회 및 생산통상투자수산부

##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

이 협정에서 투자에 관한 다음의 정의 및 의무의 필요성에 대하여,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에콰도르 대표단 간 양해에 도달하였다.

제1장(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및 제10장(금융서비스)의 목적상,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기업
- 나. 주식, 증권 및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 다. 채권, 회사채 및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sup>13</sup>
- 라. 선물, 옵션 및 그 밖의 파생상품
- 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 및 그 밖의 유사한 계약
- 바. 지식재산권
- 사. 면허, 인가, 허가 및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sup>14 15</sup>, 그리고
- 아.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

<sup>13</sup> 채권, 회사채 및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지닐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지닐 가능성이 보다 낮다.

<sup>14</sup> 특정한 유형의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그러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한도에서, 양여를 포함한다)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당사국 법에 따라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성격 및 범위와 같은 요소에 달려 있다.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면허, 인가, 허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단 중에는 국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의 내용은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과 연계된 자산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저해하지 않는다.

<sup>15</sup>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 행위 또는 행정 행위에 들어 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않는다.

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관련 재산권<sup>16</sup>

투자는 다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 공적부채 운영<sup>17</sup>, 또는

나. 투자의 특징을 지닌 대부가 아닌 한,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청구권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sup>18</sup>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본다.

제10장(금융서비스)의 목적상,

### 송금<sup>19</sup>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최초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나. 이윤, 배당, 자본이득, 그리고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sup>16</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자가 아니다.

<sup>1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부채 운영은 비차별적인 대우의 적용을 받는다.

<sup>18</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투자자" 및 "당사국의 투자자"의 정의의 목적상, 투자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자원 또는 자본을 이전하거나 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는 것과 같이, 투자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나 행위들을 한 경우, 투자를 "하고자 시도"하는 투자자로 양해한다.

<sup>19</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8-가(송금)는 이 항에 적용된다.

대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다. 이자, 로열티 지불, 관리 수수료, 그리고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의 시점에서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현물수익이 당사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서면 합의에서 승인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 혜택의 부인

1.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그 비당사국과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나.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아는 경우,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이를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이 양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